

중지신청 안내

■ 중지 신청 서류

1. 중지 신청서(서명 필수)
2. 근로 중단 서류

유형	제출서류	기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실일 확인 후 제출
근로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계약 종료 여부 확인 후 제출

■ 중지회차·중지개월수

- 최대 1회, 총 3개월 기한 내에서 중지 가능

※ 기간 초과 시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지 신청 시 유의사항

1. 근로 중지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퇴사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일이 해당 월 20일 이내인 경우 해당 월은 근로가 인정되지 않고, 상실일이 21일부터 말일 사이인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 퇴사일이 9월 20일이고 고용보험 상실일이 9월 21일인 경우, 9월은 근로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10월부터 적립 중지 신청을 하면 되고, 중지를 원하는 기간만큼(최대 3개월 이내) 중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중지 신청 처리 완료 후 기간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중지 신청 기간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알림 문자가 전송됩니다.
4. 중지 신청 기간에는 미근로 기간에 해당하므로 적립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중지 신청 기간에는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동이체 통장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6. 중지 기간 종료 시, 다음 달 15일까지 적립재개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 적립 재개 미신청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중지 신청 기간만큼 통장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회차(1~24차)는 기존 만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적립중지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중지요청(최대 1회/총 3개월) 횟수 및 기간 :

신청횟수 - ____ 회차 / 신청기간 - ____ 개월

____ 년 ____ 월 부터 ____ 년 ____ 월까지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상기 본인은 _____ 사유로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을 ____ 개월간 적립 중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____ 년 ____ 월 ____ 일

신청인 : _____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재)충남경제진흥원 원장 귀하

적립재개 안내

■ 적립재개 신청서류

1. 적립재개신청서(서명 필수)
2. 근로 재개 서류

유형	제출서류	기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취득일 확인 후 제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 근무지 주소(충남) 확인 후 제출
근로계약근로자	근로계약서	계약 시작일 확인 후 제출

■ 적립재개 신청 시 유의사항

1. 중지기간이 종료 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적립재개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예) 2026년 9월 ~ 11월까지 총 3개월 중지 신청을 하셨을 경우, 2026년 12월 15일 이전까지 적립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적립재개 신청 시, 근로 재개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재개 신청이 승인되면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3. 재개하는 달에는 자동이체일에 출금이 정상 진행되지 않아 미납 문자를 수신할 수 있
으며, 출금 여부 확인 후 미출금되었다면 참여자 본인의 적립 계좌에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적립 재개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중지요청기간 : ____년 ____월 부터 ____년 ____월 까지 (____개월)
- 근무시작일 : ____년 ____월 ____일
- 적립재개일 : ____년 ____월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상기 본인은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적립중지를 해제하고
적립을 재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재)충남경제진흥원 원장 귀하

해지신청 안내

1. 해지의 종류 및 사유

구분	해지사유(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만기해지	- 만기까지 통장적립 + 道 거주·근로를 유지 충족
특별 중도해지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12개월 이상 저축 - 타 시·도 전출 : 12개월 이상 참여 - 병역의무 이행, 임신·출산 - 기업의 귀책사유(경영상해고, 폐업, 구조조정 등)로 퇴사한 경우 - 그 외의 경우
중도해지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12개월 미만 저축 - 근로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12개월 미만 근로 - 타 시·도 전출 : 12개월 미만 참여 - 가입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자격제외 요건 등) - 중복 불가한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 약정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진흥원에 알리지 않고 저축을 완료하는 경우 - 3회 연속 본인 적립금 미납할 경우

2. 해지 종류별 지급액

구분	지급내역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 (본인 저축액+충청남도 지원금) + 이자
중도해지	· 본인 저축액 + 이자

■ 해지 신청 서류

1. 해지신청서(서명 필수)

■ 해지 신청 시 유의사항

1. 참여자는 해지 사유 발생 시 아래 서류를 충남경제진흥원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류 》 ①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② 통장 가입부터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 및 근로내역 증명서류’ 1부 <u>※ 거주 및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지원금 미지급</u> <u>※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확인조사’를 완료한 경우 불필요</u> ③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병적 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말소자 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④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⑤ 그 밖에 <u>충남경제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u>

2. 해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셔도 1~10일까지는 해지 처리 불가합니다.
 - 해지는 매달 11일 이후부터 처리되며, 평일 기준 2~3일 소요됩니다.

3. 해지가 정상 완료되면 알림 문자가 발송됩니다.

4. 중도해지 시,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만기 해지의 경우, 저축 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해지를 위한 자격 확인을 위해 충남경제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특별중도해지(사망)의 경우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참여자의 피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해지 신청서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H.P.)
	-	

■ 해지 종류 (☐ 만기해지 ☐ 중도해지 ☐ 특별해지)

【 해지종류별 사유 】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사유에 ☒ 표시하여 제출

- ☐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 ☐ 타 시·도로 직장 이직 또는 근무지 변경, 사업장 이전 등
(* 직장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사에 반하여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됨)
- ☐ 가입 기간 중 군에 입대
- ☐ 연속하여 3회 이상 미납
- ☐ 실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등으로 미 근로
- ☐ 통장 압류 등록
- ☐ 금전적 사유
- ☐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특별 중도해지)
- ☐ 기타 ()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해지를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재)충남경제진흥원 원장 귀하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적립금 및 이자 지급신청서

■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H.P.)
	-	

■ 해지 종류 : 만기해지

■ 충청남도 지원금 수령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반드시 본인적립금계좌와 연동된 수령계좌번호(자동이체 통장) 기재

20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적립금 및 이자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인)

(재)충남경제진흥원 원장 귀하